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218

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조인철・이개호・문진석

주철현 • 이해민 • 이훈기

임호선 • 정진욱 • 박해철

허성무・김 윤・박수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주민자치회의 업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,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.

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 처리 및 주 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 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지원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

도록 하면서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0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따로법률로"를 "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	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		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		
	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		
	하여 기관운영 및 제3항에 따		
	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		
	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		
	<u>있다.</u>		
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	<u> </u>		
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			
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	<u>대통</u>		
<u>로</u> 정한다.	<u> 령령으로</u>		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		